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립중앙박물관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 으로 변경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69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 내의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하여 광복 전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독점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으로 개명되었으나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 10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u>국립중앙박물관</u> 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제10조(설립과 운영) ① ----- ----- ----- <u>국립대한민국박물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립중앙박물관</u> 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u>국립대한민국박물관</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u>국립중앙박물관</u> ,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④ ----- ----- ----- ----- ----- <u>국립대한민국박물관</u>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국립중앙박물관</u> 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	⑦ <u>국립대한민국박물관</u> ----- -----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u>국립중앙박물관</u>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 ⑧ <u>국립대한민국박물관</u>----- -----.
--	---

2. 검토의견

현행법 제10조¹⁾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외 문화유산 및 박물관자료의 보존·관리,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국내 박물관 협력망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국립중앙박물관은 1915년 경복궁 안에서 개관한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광복 이후 인수하여 1945년 12월 ‘국립박물관’의 명칭으로 개관하였다가 1972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²⁾하여 지금까지 그 명칭을 유지해오고 있음.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에 해당하는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국가기관의 명칭에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언론³⁾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설립과 운영) ①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③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2)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museum.go.kr/>) 연혁 참조
 - 3) 임태우기자, ‘00‘중앙’초, □□‘제일’고....학교명 속 일제 잔재’, SBS뉴스, 2016.8.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29946
- 경기도교육청은 ‘제일’이나 ‘중앙’ 등의 일제식 용어가 포함된 학교명 변경계획 발표
* 향토문화 학자들의 소견과 역사 문헌 등을 종합하여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인만 다니는 학교에는 ‘동(東)’이나 ‘중앙’의 방위를 붙여 한국인에 비해 우월함을 나타내도록 했고,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편의 상 표현이었다는 결론을 내림

이에 개정안은 ‘중앙’이라는 용어를 기관명에서 삭제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기관명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고 기관의 영문 명칭⁴⁾과의 불일치를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점이다.

다만, 개정안은 국가기관 중 ‘국립’과 ‘대한민국’을 동시에 명칭에 포함하고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 국립중앙박물관이 동 명칭을 사용한 지 약 50년 이상이 지나 국립중앙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에 상당한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봄.

한편, ‘국립대한민국박물관’이라는 명칭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⁵⁾’의 명칭과 유사하여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이라는 용어가 삼국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중심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 국가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에 수반되는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영문 기관명은 ‘National Museum of Korea’임.

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67조의2(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역사박물관”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참고로 유사한 취지로 국립중앙도서관의 명칭을 ‘국립대한민국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⁶⁾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문 의 처
02)6788-5379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71호